

강원도립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1-04-26 규정 제112호

(개정) 2016-02-18 규정 제388호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③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원도립대학교 구성원이라 함은 강원도립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시간강사 포함), 사무직원(일용직 포함), 조교, 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자 및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정 2016.4.25>

제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성희롱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 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성희롱·성폭력상담소) ①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은 성희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강원도립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4.25>

② 상담소에서는 소장과 부소장 및 상담소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둔다.

③ 소장은 학생상담센터장이 되며, 부소장은 교원 중에서 교학처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2.18.><개정 2016.4.25>

제6조(소장)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상담소의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상담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담소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교학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상담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밖의 위원은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2인 이내의 학생대표(남1, 여1)를 포함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4.25>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소 내규의 제정 및 개폐
2. 상담소의 예산 및 결산
3. 기타 성희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상담소 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3인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조사위원회)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담소 부소장이 되고, 위원은 소장의 조사 의뢰가 있을 때 부소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조사가 종결되는 때로 한다.

③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그 대상인 때에는 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신고)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상담소에 신청한다.

②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상담소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와 상담) ① 소장은 사건 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신고가 접수되면 소장은 지체 없이 조사위원회에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의 업무 개시는 신고가 접수된 최초의 시간으로 한다.

⑤ 신고 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소장은 30일 이내에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① 소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 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상담소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소장은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01. 4.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25.)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